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 개정

1. 개정 목적

-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재금 부과 및 배제 현황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정보관리의 효율성 및 신용정보 정확도 제고
- 신용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금액오류 제재 신설

2. 제재금 부과기준의 법적근거

- 제재금 부과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신용정보협의회 협의·결정사항의 하나임*

* 법률 제26조(신용정보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협의회를 둔다.

2.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 제재금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시행령 제22조(신용정보협의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制裁金)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제재금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정한다.

- 이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을 마련*

* '98.10.01 시행. 이후 13회 개정(최근 개정은 '09.10.02)

3. 현행 제재금 부과기준

□ 제재금 부과 대상

- 신용정보 등록 및 해제 누락
- 신용정보 등록 및 해제 지연*
- 신용정보 오등록 및 거짓등록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집중하지 않은 경우 제재금 부과

□ 제재금 배제사유

- 신용정보법령 및 감독규정에 의해 정보등록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및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합병, 종업원의 파업 등의 경우
- 채무재조정 이후에 폐지 또는 실효 등의 사유로 재등록 하는 경우
- 채권의 양·수도 또는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경우
-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제재금 부과여부 판단기준 모호

- 현재 제재금 배제대상중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매우 다양하나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 제재금 부과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발생

→ 배제 기준 및 배제 요건의 구체화로 판단기준 명확화

- 제재 관련 기록의 전산화 미비로 관련 제도 개선 등 사후관리 애로
 - 제재금 부과, 배제 현황이 전산화 되어있지 않아 기관별, 업권별 문제점 파악 및 관련 제도 개선 곤란
 - 제재금 부과 및 배제 사유의 코드화를 통한 신속한 현황 파악으로 교육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사후관리업무 효율화
- 등록금액 오류시 제재가 없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집중시 정확도 제고 유인 부족
 - 금액오류에 대한 제재금 부과로 정확도 제고 유도

5. 추진 경과

- 금융기관 의견수렴 및 배제 기준 초안 마련('11. 4월)
 - 제재금 배제 의견수렴 및 제재금 배제요청 유형 분석
- 신용정보실무간담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3회, '11. 5월~ 7월)
 - 금융기관 의견 반영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 개정안 마련
- 감독당국 협의 및 실무협의회를 통한 세부항목 조정 ('11. 8~10월)

6. 주요 개정 내용

□ 제재금 부과배제 발생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상세내용 및 배제요건 명시

○ 현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배제하는 사례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

* 주민등록번호 변경, 채무부존재소송 제기, 개별 금융기관의 등록 유예조치, 신규가입기관, 기타 경미한 오류 등

○ 부과배제사유의 상세내용과 배제요청시 증빙자료 명시

□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사유)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 부과 배제 유예기간(3개월)을 배제사유별로 차등 적용

유예기간	주요 배제사유
기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재조정 이후 폐지 또는 실효 등의 사유로 재등록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등
1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정보 불일치로 재등록 - 예적금 담보대출 연체시 상계처리 전에 연체등정보로 등록했다가 오등록 삭제한 경우 등 특수한 대출 관련 정보 - 개별기관이 실시한 분할상환 약정, 개별워크아웃, 등록유예조치 등의 경우 - 채무부존재소송 제기로 등록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등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법령 등에 따른 등록기준 변경시 - 전산시스템 구축 변경(프로그램 개발·변경 포함) 및 전산장애시(다만 인지가 늦은 경우 일정기간 유예) - 채권의 양·수도 관련 재등록하는 경우 등

□ 제재금 부과 사유 신설 및 부과 배제사유 코드화 등

○ 부과 사유(제재금 부과기준 별표1 개정)

- 부과 사유 신설(금액오류) : 개인신용정보의 등록 금액을 오등록한 경우 건별로 제재금 2만원 부과
- 등록(해제)의 지연, 누락 및 부정확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29개 사유 코드화('111' ~ '511')

○ 부과 배제사유(제재금 부과기준 제7조 개정 및 별표2 신설)

-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등록기준 변경, 전산시스템 구축 변경, 채무재조정, 채권 양수도,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40개 사유 코드화('111' ~ '999')

7.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8. 시행일

- 2012. 1. 1. 신용정보 등록·해제분부터 적용
- 다만, 별표1) 제재금 부과기준 3. 부정확에 따른 제재금 부과기준 중 금액오류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p>제1조~제6조 (생략)</p> <p>제7조(부과배제) ① <u>종합집중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제재금 부과를 배제할 수 있다.</u></p> <p>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의해 정보등록 <u>내용이</u> 변경되는 경우</p> <p>2.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및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p> <p>3. <u>금융기관의 합병, 종업원의 파업 등의 경우</u></p>	<p>제1조~제6조 (현행과 같음)</p> <p>제7조(부과배제) ①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별표2)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u></p> <p>1.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및 <u>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정보등록 기준이</u> 변경되는 경우</p> <p>2. 전산시스템 구축·변경(<u>프로그램의 개발 및 변경 포함</u>) 또는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한 경우</p> <p align="center">(삭 제)</p>	<p>- 기간 일괄 적용 배제 및 세부기준 마련</p> <p>- 자구 수정</p> <p>- 자구 수정</p> <p>- 금융기관의 합병은 2호로, 파업은 5호로 이관</p>

현행	개정	비고
<p>4. 채무재조정 이후에 폐지 또는 실효 등의 사유로 재등록하는 경우</p> <p>5. 채권의 양·수도 또는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경우</p> <p>6.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기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직원의 파업 및 태업</p> <p>나. 경미한 착오로 인한 등록 및 해제</p> <p>다. 기업관련 일부 정보 등록 누락</p> <p>라. 식별정보 변경 등</p> <p>마. 등록정보 불일치로 오류통보된 경우</p> <p>바. 특수한 대출관련 정보</p> <p>사.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경우</p> <p>아. 등록유예조치 관련 정보</p> <p>자. 신규 가입기관</p> <p>차.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 호 체상</p> <p>- 호 체상</p> <p>- 배제사유 구체화, 호 체상</p>
<p>② (생략)</p> <p>제8조(부과제외) (생략)</p>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부 칙																				
<p>(별표1) 2.~3. 부과기준</p> <p>2. 지연 및 누락 기간별 제재금 부과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부과기준</th> <th>제 재 금</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개인기업 및 법인의 대상기업체 정보 등록</td> <td>대상기업체를 2개월 이상 계속 하여 등록 누락</td> <td>10만원 (매월 부과)</td> <td>-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 월말여신 제외</td> </tr> </tbody> </table>				구 분	부과기준	제 재 금	비 고	- 개인기업 및 법인의 대상기업체 정보 등록	대상기업체를 2개월 이상 계속 하여 등록 누락	10만원 (매월 부과)	-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 월말여신 제외	<p>1.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 신용정보 등록·해제분 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 제재금 부과기준 3. 부정확에 따른 제재금 부과기준중 금액오류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 <u>부과사유코드 신설</u></p> <p>2. 지연 및 누락 기간별 제재금 부과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부과기준</th> <th>제 재 금</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개인기업 및 법인의 대상기업체 정보 등록</td> <td>대상기업체를 2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 누락</td> <td>10만원 (매4주차별 계속 부과)</td> <td>-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 월말여신 제외 - <u>기간경과시 해당 제재금을 각각 부과함</u></td> </tr> </tbody> </table>				구 분	부과기준	제 재 금	비 고	- 개인기업 및 법인의 대상기업체 정보 등록	대상기업체를 2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 누락	10만원 (매4주차별 계속 부과)	-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 월말여신 제외 - <u>기간경과시 해당 제재금을 각각 부과함</u>	<p>- 등록 및 해제사유발생일 기준</p> <p>- 부과사유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부과사유코드 신설</p> <p>- 부과기준 명확화</p>
구 분	부과기준	제 재 금	비 고																					
- 개인기업 및 법인의 대상기업체 정보 등록	대상기업체를 2개월 이상 계속 하여 등록 누락	10만원 (매월 부과)	-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 월말여신 제외																					
구 분	부과기준	제 재 금	비 고																					
- 개인기업 및 법인의 대상기업체 정보 등록	대상기업체를 2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 누락	10만원 (매4주차별 계속 부과)	-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 월말여신 제외 - <u>기간경과시 해당 제재금을 각각 부과함</u>																					

현 행		개 정		비 고	
3. 부정확에 따른 제재금 부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등정보 추가 - 단위오류 뿐만 아니라 금액오류도 제재 	
구 분	부 과 기 준	구 분	부 과 기 준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거래정보중 대출, 지급보증, 기업어음 등 신용공여(담보, 한도거래,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등 신용공여기간 포함) 등록	②신용공여(담보한도, 신용공여기간포함), 기업어음,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의 금액 단위를 부정확하게 등록한 경우	10건 이하 <u>착오</u>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거래정보중 대출, 지급보증, 기업어음 등 신용공여(담보, 한도거래,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등 신용공여기간 포함) 등록	②연체등정보, 신용공여(담보한도, 신용공여기간포함), 기업어음,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의 금액을 <u>오등록한 경우. 다만 오등록금액과 정상금액의 차이가 500만원 이내 또는 정상금액의 10% 이내인 경우는 제외</u>	10건 이하
		50건 이하 <u>착오</u>			50건 이하
		100건이하 <u>착오</u>			100건이하
		300건 이하 <u>착오</u>			300건 이하
		500건 이하 <u>착오</u>			500건 이하
		500건 초과 <u>착오</u>			500건 초과
(신 설)		구 분	부 과 기 준	제재금	비고
		-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금액 오류	- 연체등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의 등록(연체)금액을 오등록한 경우. 다만 오등록금액과 정상금액의 차이가 100만원 이내 또는 정상금액의 10% 이내인 경우는 제외	2만원	정보건별 기준
(신 설)		(별표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제사유와 배제요건 등을 구체화

(별표 1)

제 재 금 부 과 기 준

1. 신용정보별 등록 시기

구 분	등 록 시 기
- 연체등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해제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집중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집중
- 채무보증정보 등록·해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집중
- 가계당좌 및 당좌예금 개설·해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집중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발급 및 해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집중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 등록·해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집중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거래정보중 대출(연체포함), 지급보증, 기업어음 등, 신용공여(담보, 한도 거래,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 약정, 신용공여기간 포함) 등록	◦ 일일집중 : 사유발생일로부터 제2영업일(말일보 6영업일) 이내 ◦ 월 집 중 : 익월 6영업일 이내
- 신용능력정보 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2. 지연 및 누락 기간별 제재금 부과기준

구분	구분	부과기준	제재금	부과사유 코드	비고	
등록· 해제(지) 지연	- 연체등 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록·해제	30일 이내	2만원	<u>111</u>	발생내역별 부과	
		90일 이내	4만원	<u>112</u>		
		180일 이내	6만원	<u>113</u>		
		180일 초과	8만원	<u>114</u>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지 - 채무보증정보 등록·해지 -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해지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해지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 등록·해지	30일 이내	2만원	<u>121</u>	정보건별 부과	
		90일 이내	4만원	<u>122</u>		
		180일 이내	6만원	<u>123</u>		
		180일 초과	8만원	<u>124</u>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거래정보 중 대출, 지 급보증 등 신용공여(담보, 한도거래 및 신용공여기간 포함)	5일 이내	5만원	<u>131</u>	정보제공 기관별 부과	
		5일 초과	10만원	<u>132</u>		
	등록· 해제(지) 누락	- 연체등정보 및 금융질서문 란정보 등록·해제	180일 이내	8만원	<u>211</u>	발생내역별 부과
			180일 초과	10만원	<u>212</u>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지 - 채무보증정보 등록·해지 -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해지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해지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 등록·해지		180일 이내	8만원	<u>221</u>	정보건별 부과	
		180일 초과	10만원	<u>222</u>		

구분	구분	부과기준	제재금	부과사유 코드	비고
등록· 해제(지) 누락	- 연체등정보 및 금융질서문 란정보 등록·해제	180일 이내	8만원	<u>231</u>	발생내역별 부과
		180일 초과	10만원	<u>232</u>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지 - 채무보증정보 등록·해지 -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해지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해지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 등록·해지	180일 이내	8만원	<u>241</u>	정보건별 부과
		180일 초과	10만원	<u>242</u>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거래정보중 대출, 지급 보증 등 신용공여(담보, 한 도거래 및 신용공여기간 포 함)등록	10억원 미만	5만원	<u>251</u>	등록대상 (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10억원 이상	10만원	<u>252</u>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기업어음거래상황정보 등록	100억원 이하	5만원	<u>261</u>	
		100억원 초과	10만원	<u>262</u>	
	- 개인기업 및 법인의 대상기 업체 정보 등록	대상기업체를 4주 계속하여 등록 누락	2만원	<u>271</u>	- 등록대상 (개인기업 및 법인) 별 부과 - 월말여신 제의 - <u>기간경과시</u> <u>해당</u> <u>제재금을</u> <u>각각 부과함</u>
		대상기업체를 6주 계속하여 등록 누락	5만원	<u>272</u>	
		대상기업체를 2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 누락	10만원 (<u>매4주차</u> <u>별 계속</u> <u>부과</u>)	<u>273</u>	

3. 부정확에 따른 제재금 부과기준

구 분	부 과 기 준	제재금	부과사유 코드	비 고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거래정보중 대출, 지급보증, 기업 어음 등 신용공여(담보, 한도거래, 법인채무 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등 신용공여기간 포함) 등록 ^{주1)}	①대상기업체, 신용공여 (담보한도포함), 기업 어음,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의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주민) 등록번호를 부정확하게 등록한 경우	10건 이하 착오	5만원	<u>311</u> <u>321</u> <u>331</u>	등록대상 (개인기업 및 법인) 별 부과
	②연체등정보, 신용공여(담보한도, 신용 공여기간포함), 기업 어음,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의 금액 단위를 부정확하게 등록한 경우 <u>을</u> 오등록한 경우. 다만 오등록금액과 정상금액의 차이가 500만원 이내 또는 정상금액의 10% 이내인 경우는 제외	50건 이하 착오	10만원	<u>312</u> <u>322</u> <u>332</u>	
	③일일여신 또는 월말여신, 기업어음,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의 기록 보존기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괄 정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 (금액변동포함) (개정 '07. 8. 31.)	100건 이하 착오	20만원	<u>313</u> <u>323</u> <u>333</u>	
		300건 이하 착오	30만원	<u>314</u> <u>324</u> <u>334</u>	
		500건 이하 착오	40만원	<u>315</u> <u>325</u> <u>335</u>	
	- 연체등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개인대출 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카드 발급정보,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정보의 거짓 등 록 및 부당한 해소		50만원	<u>411</u>	
- <u>개인에 대한 신용 정보 등록금액 오류 (신설 '11.12.1.)</u>	- <u>연체등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의 등록(연체)금액을 오등록한 경 우. 다만 오등록금액과 정상금액의 차이가 100만원 이내 또는 정상금 액의 10% 이내인 경우는 제외</u>		2만원	<u>511</u>	정보건별 기준

주1) 부과기준 세부사항 ①, ②, ③ 중 중복되는 경우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사항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본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적용하되 기업신용정보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및 신용정보 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정보등록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가. 제재금부과 유예기간

등록기준 변경사항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기업신용정보는 동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종합집중기관이 당해 월 말일보를 등록처리하기 전까지 집중한 경우에 한함

나. 상세내용 및 배제요건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정보등록 기준 변경	관계법령 등 정보등록기준 변경에 따라 신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보등록기준 변경사항 확인후 배제	111

2. 전산시스템 구축 변경 (프로그램 개발·변경 포함) 및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가. 제재금부과 유예기간

변경사항 적용일 또는 장애 발생일 등(이하 “적용일 등”이라 함)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적용일 등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단, 적용일 등으로부터 최장 1년 이내로 제한)로 한다. 다만, 기업 신용정보는 적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종합집중기관이 당해 월 말일보를 등록처리 하기 전까지 집중한 경우에 한함

나. 상세내용 및 배제요건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전산오류 (장애)등	신규 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증설 등 시스템 재구축(프로그램 개발·변경 포함)으로 인한 경우 (금융기관의 합병 등으로 인한 전산통합 포함)	시스템 재구축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211
	온라인 전송 시 통신장애로 인하여 정보가 일부만 전송되거나 불완전하게 전송된 경우	해당일자에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발송한 전산 파일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212
	신규카드의 현금서비스 정보가 구 카드의 현금 서비스정보로 등록된 경우	전산원장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213
	대출계정과목 변경시 해제후 등록한 경우		214
협회(중앙회) 등의 전산오류 (장애)등	협회(중앙회) 등의 전산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단, 사유코드 211~214의 경우에 한함)	협회(중앙회) 로 전송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와 협회(중앙회) 등의 오류사실 확인 후 배제	221

3. 채무재조정 이후에 폐지 또는 실효 등의 사유로 재등록하는 경우

가. 제재금부과 유예기간

사유별로 별도 규정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상세내용 및 배제요건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파산면책 관련	면책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등록채권을 면책결정일자로 소급하여 해제한 경우	면책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311
	면책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신용정보(연체 등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는 해제되었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신용정보는 해제되지 않아 미해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면책결정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		312
	파산면책 취소에 따라 연체등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 정보 등을 등록사유발생일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313
회생계획 인가 관련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등정보를 등록사유 발생 일자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321
	회생계획 인가정보 등록누락으로 해지되지 않은 정보 또는 인가정보 등록사실을 알지 못하여 등록한 연체등 정보를 인가일로 소급 해제한 경우		322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이행 완료로 면책되어 대출 정보와 채무보증정보 등을 면책일로 소급 해제한 경우		323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지 않아 미해제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인가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		324
	회생계획 인가 폐지로 연체등정보를 재등록한 경우	회생계획 인가 폐지 등 관련 증빙자료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 확인후 배제	325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이 아니거나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연체등정보를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신용회복지원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331
	신용회복(프리워크아웃 포함) 지원결정이 실패 되거나 반송되어 연체등정보를 소급하여 등록한 경우		332
분할상환 약정, 개별기관 워크아웃등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분할상환금 납입 후 연체등 정보를 약정체결일로 소급하여 해제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 기간은 납입일, 약정취소일 또는 실패 일로부터 1개월 이내	341
	분할상환 약정 취소, 개별기관 워크아웃등 실패자에 대한 연체등정보를 재등록한 경우		342
시효이익 포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제되었으나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로 재등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확인후 배제	351

4. 채권의 양수도, 채무자 변경 또는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경우

가. 제재금부과 유예기간

양수도일 또는 양도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상세내용 및 배제요건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채권의 양수	양수한 채권의 대출정보 및 연체등정보를 당초 등록사유발생일로 소급 등록한 경우	양수도(취소) 관련 자료 확인 후 배제	411
	학자금대출 대위변제후 잔여채권 양수시 대위변제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소급 등록한 경우		412
채권 양도취소	채권 양도 후 양도취소로 재등록한 경우		421
채권양도	채권양도 시 후속업무 처리 후 양도일로 소급하여 해제한 경우	양도 관련 자료 확인후 배제	431

5.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제재금부과 유예기간

사유별로 별도 규정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함. 다만, 기업신용정보는 직원의 파업 및 태업(사유코드 511)인 경우와 신규 가입기관(사유코드 591)의 경우에 한하여 쟁의종료일 또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유예하되 종합집중기관이 당해 월 말일보를 등록처리 하기 전까지 집중한 경우에 한함

나. 상세내용 및 배제요건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직원의 파업등	직원의 파업 및 태업으로 인한 경우	쟁의신고사실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쟁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511
경미한 등록 및 해제 오류	일부 상환을 전액 상환으로 처리하거나 착오로 등록정보 해제 후 재등록한 경우	원장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오류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521
	착오로 정보 등록 후 오류 삭제한 경우	원장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오류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522
	등록사유 발생일 또는 해제사유 발생일을 잘못 등록한 경우	원장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오류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23
	대손상각처리 등으로 해당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면서 연체등정보를 변경(사유코드 변경)하지 않고 특수채권으로 신규 등록한 경우	원장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524
	외국법인 등 등록대상이 아닌 기업의 여신정보 등록 후 대상기업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원장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525
기업의 연체등 정보 등록·해제 누락	기업에 대한 정보등록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로 일괄 등록 하여야 하나 두 번호 중 하나의 번호로만 등록한 후 미등록번호를 추가 등록한 경우, 또는 해제시 어느 하나를 누락한 경우	변동분 또는 원장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 기간은 등록·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31
식별정보 변경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기 등록정보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재등록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 확인 후 배제	541
	사망자의 정보를 소급 해제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542

발생사유	상세 내용	배제 요건	배제사유 코드
등록정보 불일치로 재등록	법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대상 기업체 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 등록정보와 상이하여 카드개설이나 연체등록 정보 등록 시 오류 통보된 건을 재등록한 경우	오류통보 내역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오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551
특수한 대출 관련 정보	대출 잔액이 1000원 미만이었다가 추가대출이 발생하여 기존 대출의 등록사유발생일로 등록한 경우	원장 등의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추가대출발생일 또는 연체등록 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561
	예적금 담보대출을 연체시 상계처리 전에 연체등록정보로 등록했다가 오등록 삭제한 경우		562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	채무부존재소송이 제기되어 등록정보를 삭제한 경우	소송관련 증빙자료와 원장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 기간은 소장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단, 2012년 1월 31일까지는 3개월 이내)	571
등록 유예 조치 관련 정보	천재지변, 전염병 및 기타 사유로 일정한 대상자의 연체등록정보를 등록유예 하였다가 추후 등록한 경우	등록유예조치, 협약 등 관련 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 기간은 등록유예조치일 또는 등록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581
	학자금 대출, 기업구조조정협약, 신용위험평가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령과 금융기관간 협약 등에 따른 등록유예 대상인 연체등록정보를 오등록 삭제하거나 추후 재등록한 경우		582
신규 가입 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규로 가입한 기관의 정보등록 오류	신규가입일자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591
기타	기타 다른 사유와 유사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제재금부과 유예기간은 유사사유와 동일하게 적용	999